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1466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평등·성인지 및 젠더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무로,
- 나. 성평등·성인지 교육, 젠더 감수성 향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가칭)여성NGO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년 (2017. 7. ~ 2019. 6.)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안) : 260백만원

나. 주요 위탁사무

- (가칭)여성NGO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성평등·성인지 및 젠더 아카데미 운영
 - 성평등 및 젠더감수성 관련 체험학습장 운영
 - 여성주의 활동가 및 소모임 대상 시민사회단체 설립·운영 컨설팅
 - 성평등 이슈 등 공동 의제 개발을 위한 공유·토론 및 회의 공간 지원
 - 여성주의 개인활동가 대상 Co-Working Zone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우리 사회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주체로서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활동가들의 젠더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성평등·성인지 교육, 젠더 감수성 향상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 및 제41조

제2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4.5.14.>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심주현(☎2133-5022)